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두만강 에서의 3 개국 국경수역경계선확정에 관한 협 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아래부터는 계약국들이라고 한다) 는 선린적인 친선관계의 공고 발전을 위하여 주전에 대한 호상존중과 평토완정,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세 나라사이의 해당한 현행국경조약들에 근거하여 두만강 (두만나야강, 도문강) 에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공동국경수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역, 로씨야련방 수역의 경계선 (아래부터는 3 개국 국경수역경계선이라고 한다) 을 확정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두만강에서의 3 개국 국경수역경계선은 로중국경 제 4 2 3 호 표말로부터 두만강주류중심선에 수직되게 이 강의 두 기슭사이에 놓여있는 직선이다.

이 선은 두만강에서 조중공동국경수역이 끝나는 선이다.

2. 두만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접촉점 (아래부터는 3 개국 국경접촉점이라고 한다) 은 3 개국 국경수역경계선이 두만강주류의 중심선과 교차되는곳에 있다.

이 점은 동시에 조로국경이 시작되는 점이다.

제 2 조

체약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두만강에서 그 어떤 자연적 변화가 발생해도 3개국 국경수역경계선과 3개국 국경접촉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제 3 조

1. 3개국 국경수역경계선과 3개국 국경접촉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두만강의 두 기슭 3개국 국경수역경계선의 연장선상에 세개의 표식물을 세운다.

1호 표식물로는 두만강좌측기슭에 있는 로중국경 제 423호 표말을 리용한다. 1호 표식물의 지리적자리표는 북위 $B=42^{\circ}25'$ 10.2초, 동경 $L=130^{\circ}38'$ 17.7초이다.

2호 표식물은 두만강우측기슭 조선측령토에 세운다.

2호 표식물의 지리적자리표는 북위 $B=42^{\circ}24'$ 59.5초, 동경 $L=130^{\circ}38'$ 06.5초이다.

3호 표식물은 두만강좌측기슭 로씨야측령토에 세운다.

3호 표식물의 지리적자리표는 앞으로 현지에서 측정한다.

1호와 2호, 3호 표식물의 자리표는 평양자리표체계를 리용한다

3개국 국경접촉점이 두만강의 수면위에 놓이므로 이 점에는 국경표말을 세우지 않는다.

2. 1호 표식물은 4면체의 화강석표말체와 콘크리트기초로 이루어져있다.

이 표식물의 로씨야쪽으로 향한 면에는 로어로 《로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고 중국쪽으로 향한 면에는 중어로 《중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으며 나라이름우에는 중국국장이 붙어있다.

나라이름들아래에는 아라비아수자로 국경표말번호 《4 2 3》과 표말을 세운 년도 《1 9 9 3》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이 표식물의 다른 두면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

2 호 표식물은 3면체의 화강석표말체와 철근콘크리트기초로 이루어져있다.

이 표식물의 조선쪽으로 향한 면에는 조선어로 《조선》이라는 글자가, 로씨야쪽으로 향한 면에는 로어로 《로씨야》라는 글자가, 중국쪽으로 향한 면에는 중어로 《중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나라이름들의 아래에는 아라비아수자로 번호 《2》와 표말을 세운 년도가 새겨져있다.

3 호 표식물은 3면체의 화강석표말체와 철근콘크리트기초로 이루어져있다.

이 표식물의 조선쪽으로 향한 면에는 조선어로 《조선》이라는 글자가, 로씨야쪽으로 향한 면에는 로어로 《로씨야》라는 글자가, 중국쪽으로 향한 면에는 중어로 《중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나라이름들의 아래에는 아라비아수자로 번호 《3》과 표말을 세운 년도가 새겨져있다.

1 호와 2 호, 3 호 표식물의 규격과 형태도안은 이 협정의 부록으로 된다.

제 4 조

1. 계약국들은 1 호와 2 호, 3 호 표식물이 이동, 파손, 상실되지 않도록 호상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국들중 어느 일방도 이 협정과 판제되는 어떠한 다른 표

식물을 일방적으로 세울수 없다.

2. 1호 표식물은 중국측이 책임지고 보호, 수리한다.

2호 표식물은 조선측이 책임지고 보호, 수리한다.

3호 표식물은 로씨야측이 책임지고 보호, 수리한다.

3. 계약국들중 어느 일방이 1호와 2호, 3호 표식물이 이동, 파손, 상실된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다른 두측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표식물의 보호와 수리를 책임진측은 다른 두측 대표들의 립회하에 이 협정의 부록으로 첨부된 표식물들의 규격과 형태도안에 맞게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원래의 장소에 새로 세워야 한다.

계약국들은 표식물을 복구하거나 새로 세운데 대하여 공동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4. 계약국들은 1호와 2호, 3호 표식물의 위치를 옮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협상을 진행하고 다른곳에 표식물을 세울수 있다.

그러나 표식물의 위치변화는 이 협정이 규정한 3개국 국경수역경계선과 3개국 국경접촉점의 위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계약국들은 표식물의 위치가 변한데 대하여 공동기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 5 조

계약국들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후 현 3개국회담의 테두리안에서 3개국 국경접촉점의 구체적위치와 3호 표식물의 자리표를 확정하고 2호와 3호 표식물들을 세우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로씨야련방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3개국 국경접촉점에

판한 서술의정서를 작성하고 3개국 국경접촉점 지역도를 만든다.

제 6 조

체약국들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국내법적절차를 끝낸 다음 호상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통지를 보낸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주체 87(1998)년 11월 3일 평양에서 조인되었으며 조선어, 로어, 중어로 각각 세부씩 작성된 이 세 원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로씨아련방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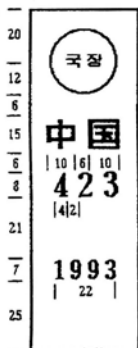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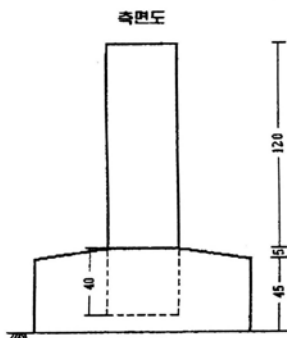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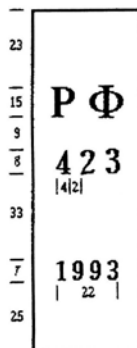
万永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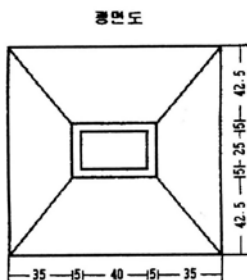
1호 표식물 (로중국경의 제 423호 국경표말)의 규격과 형태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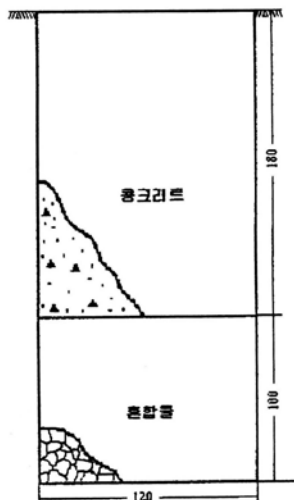
중국쪽면



로중하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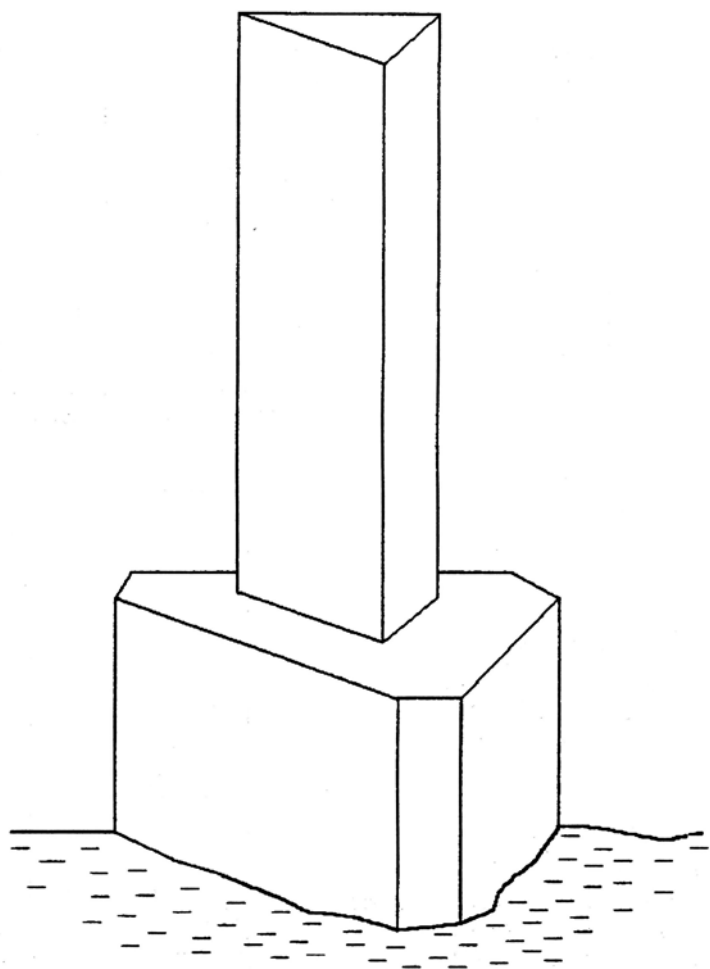
기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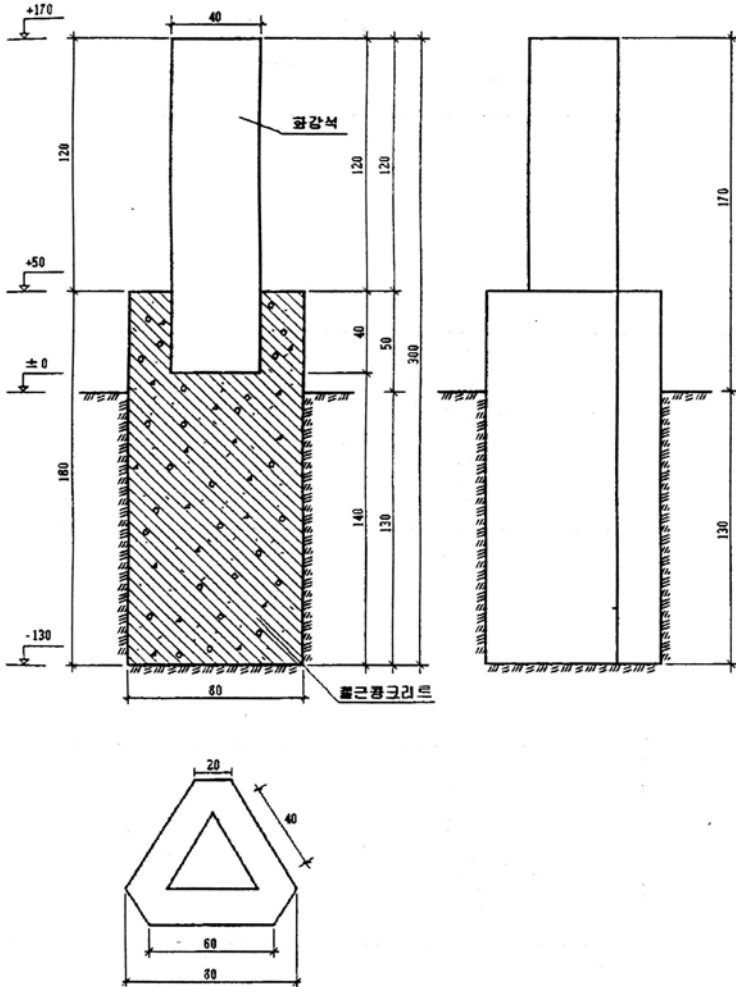
설 명

- 1 단위는 CM이다.
- 2 표말제는 화강석이며 기초는 200#세멘트콘크리트이다.
- 3 기초의 지면로돌부분은 철근콘크리트이다.
- 4 표말의 나라이름과 수자는 물을 파서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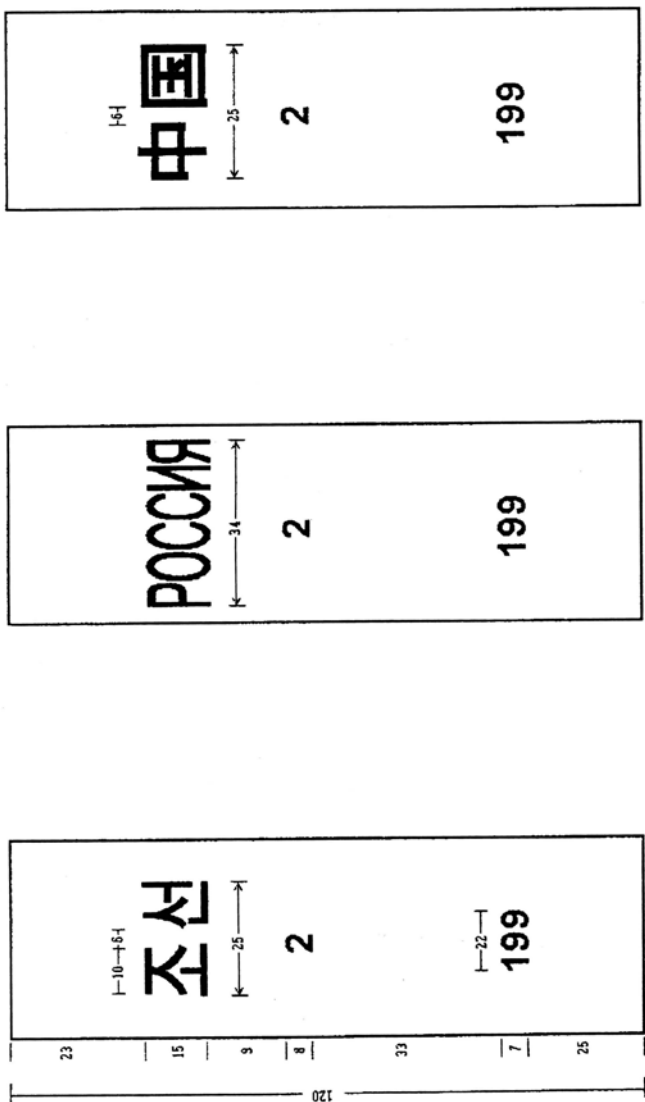
2호와 3호 표식물의 일반형태



2 호와 3 호 표말의 자름면도



2호 표식물의 3면형태도인



3호 표식물의 3면형래도인

23	10	6	10	조선	25	3	22	199	14	14	14	15	15	25
----	----	---	----	----	----	---	----	-----	----	----	----	----	----	----

				РОССИЯ	34	3		199						
--	--	--	--	--------	----	---	--	-----	--	--	--	--	--	--

				中国	25	3		199						
--	--	--	--	----	----	---	--	-----	--	--	--	--	--	--